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14 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권향엽·박민규·채현일

김문수 · 오세희 · 박지원

전진숙 • 박용갑 • 문진석

임미애 · 정동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별사면,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형법」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「군형법」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,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특별사면의 제한) 특별사면은 「형법」 제87조제1호·제2호 또는 「군형법」 제5조제1호·제2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5조의2(특별사면의 제한) 특별
	사면은 「형법」 제87조제1호
	・제2호 또는 「군형법」 제5
	조제1호ㆍ제2호의 죄로 형을
	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하지
	<u>아니한다.</u>